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930

발의연월일: 2025. 2. 6.

발 의 자:이연희·박 정·한민수

윤종군 • 박상혁 • 허종식

한준호 · 임미애 · 정준호

이해식 · 김남희 · 문진석

김윤덕 • 이춘석 • 이정문

서미화 • 손명수 • 복기왕

의원(18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한 민간 전문교육기관이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전문교육기관의 부정교육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세부 안전교육 내용 및 전문강사의 역량, 교육실적 등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업무를 관리할 전담기관이 없어 교육의 품질저하 및 실효성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.

이에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고, 국 토교통부장관이 안전교육에 대한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민간 전문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·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교육의 품질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조종사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고, 교육총괄기간 지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(안 제31조)
 - 1)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, 사업정지 요건 등을 규정함
 - 2)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업무에 대한 확인·점검 등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
 - 3) 교육총괄기관의 안전교육업무에 대한 확인·점검을 위하여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·방해·기피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
 - 4) 교육총괄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·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

법률 제 호
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에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및 그 소속 인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
- 2. 안전교육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안전교육등의 결과를 실제 안전교육등의 결과와 다르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
- 3.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안전교육등을 하게 하지 아니할 것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전문교육기관 또는 그 소속 인력이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

반한 경우

- 3. 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
- 4.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안전교육등의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
- 5.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교육을 한 경우
- 6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-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된다.
-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등의 업무를 확인·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안 전교육등 업무 총괄기관(이하 "교육총괄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- 1. 제14조제7항에 따른 총괄기관
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⑧ 교육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안전교육등업무의 확인 · 점검
- 2.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교육실적 관리
- 3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⑨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교육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렁으로

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총괄기관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교육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① 교육총괄기관은 안전교육등업무의 확인·점검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문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 제7항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·감독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.
- ③ 그 밖에 교육총괄기관의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전문교육기관
- 8. 교육총괄기관

제44조제2항제5호의2 중 "제20조의5제3항"을 "제20조의5제3항, 제31조 제9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	제31조(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
	기관 및 그 소속 인력은 다음 각
	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	1.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과 관
	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
	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
	아니할 것
	2. 안전교육등을 실시하지 아니하
	고 거짓으로 실시한 것으로 하거
	나 안전교육등의 결과를 실제 안
	전교육등의 결과와 다르게 작성
	하지 아니할 것
	3.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
	안전교육등을 하게 하지 아니할
	<u>것</u>
<u><신 설></u>	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
	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	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
	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
	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
	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
	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

<신 설>

<신 설>

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

 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

 받은 경우
- 2. 전문교육기관 또는 그 소속 인

 력이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

 위반한 경우
- 3. 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오
- 4.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안전교육등의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경우
- 5.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 정지기간 중에 교육을 한 경우
- 6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-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.
-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 관의 안전교육등의 업무를 확인·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안 전교육등 업무 총괄기관(이하 "교 육총괄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- 1. 제14조제7항에 따른 총괄기관
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⑧ 교육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안전교육등 업무의 확인ㆍ점검
- 2.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교육실적 관리
- 3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⑨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교육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총괄기 관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교육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① 교육총괄기관은 안전교육등 업

<신 설>

<신 설>

제35조(보고·검사 등) ① 국토교통 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 게 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사업장·건설현장·사무소 또 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, 서류, 건설기계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하게 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무의 확인·점검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문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.
① 제7항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·감독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.

① 그 밖에 교육총괄기관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에35조(보고·검사 등) ①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<<u>신</u> 설> <신 설>

제44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5. (생략)
- 5의2. 제14조제11항 또는 <u>제20조</u> 의5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・방해・기 피한 자

<u>7. 전문교육기관</u>
8. 교육총괄기관
제44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~ 5. (현행과 같음)
5의2 <u>제20조</u>
의5제3항, 제31조제9항